

最低賃金法案(代案)

議案	
番號	

提案年月日：1986. 12. .

提案者：保健社會委員長

1. 代案의 提案經緯

가. 最低賃金法案이 1986年 3月 11日 鄭始鳳議員外 20人으로부터 發議된 후, 同年 10月 23日 沈完求議員外 88人이, 또한 同年 11月 20日에는 姜昌熙議員外 36人이 各各 發議하여 3件의 議案이 當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음.

나. 當委員會에서는 鄭始鳳議員外 20人이 發議한 法律案에 대해서는 1986年 6月 21日 第130回 國會(臨時會) 第4次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1986年 4月 7日 第129回 國會(臨時會) 第5次委員會에서 構成된 바 있는 勞動關係法案審查小委員會에 審查報告토록 委任하였고, 沈完求議員外 88人, 그리고 姜昌熙議員外 36人이 各各 發議한 法案에 대해서는 1986年 11月 27日 第131回 國會(定期會) 第12次委員會에서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역시 이미 構成된 바 있는 勞動關係法案審查小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查報告토록 하였음.

다. 勞動關係法案審査小委員會는 1986年12月10日 同法案에 대하여 眞摯하게 審査한 結果 同一한 題目的 法律의 制定에 對해서 3件의 法案으로 提出되었으므로, 各 法案의 內容을 統合하여 單一案을 마련, 1986年12月10日 第14次委員會에 審査報告하여 이를 採擇함으로써, 3件의 原案을 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委員會의 代案으로 本法案을 提案하게 되었음.

2. 代案의 提案理由

勤勞者賃金の 最低水準을 國家가 法的으로 保障함으로써 低賃金勤勞者의 生活安定을 圖謀하여 勞動力의 圓滑한 再生産과 質的 向上을 期하고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 가. 適用範圍는 勤勞基準法의 適用範圍와 同一하게 함.(案 第3條)
- 나. 最低賃金の 決定基準은 勤勞者의 生計費, 類似勤勞者의 賃金 및 勞動生産性을 고려하여 決定함.(案 第4條第1項)
- 다. 最低賃金은 事業의 種類別로 定함.(案 第4條2項)
- 라. 最低賃金の 決定單位는 月給, 週給, 日給으로 定하되 時間給으로도 이를 표시하도록 함.(案 第5條)

- 마. 18歲未滿者에 대한 最低賃金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入社하여 6月이 經過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案 第5條第2項)
- 바. 最低賃金은 勞動部長官이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審議·議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每年 決定하도록 함.(案 第8條)
- 사.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最低賃金案에 대한 勞動部長官의 再審議 要請權 및 勞·使 代表의 異議提起權을 둠.(案 第8條第3項 및 第9條)
- 아. 勞動부에 最低賃金審議委員會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 事業種別別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도록 함.(案 第12條 및 第19條)
- 자. 最低賃金審議委員會는 勞·使·公益代表 各 9人으로 構成하고 3人의 特別委員을 둘 수 있도록 함.(案 第14條 및 第16條)
- 차.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는 事務局과 研究委員을 둠.(案 第20條)
- 카. 最低賃金を 위반한 使用者에 대하여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만원이하의 罰金を 科함. (案 第28條)
- 타. 最初의 最低賃金은 勞動部長官이 1987年7月1日까지 審議를 要請하고 1987年12月15日까지 決定·告示하도록 함(案 附則 第3條)

공백

最低賃金法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の 最低水準을 보장하여 勤勞者의 生活安定과 勞動力의 質的向上을 기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勤勞者”, “使用者” 및 “賃金”이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 第15條 및 第18條에 規定된 勤勞者, 使用者 및 賃金を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①이 법은 勤勞基準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適用한다. 다만, 事業의 種類·規模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은 船員法의 適用을 받는 船員 및 船員을 사용하는 船舶의 所有者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 2 章 最低賃金

第 4 條(最低賃金の 決定基準과 區分) ①最低賃金は 勤勞者の 生計費, 類似勤勞者の 賃金 및 勞動生産性を 고려하여 事業의 種類別로 區分하여 定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種類別 區分은 第 12 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勞動部長官이 定한다.

第 5 條(最低賃金額) ①最低賃金額(最低賃金으로 定한 金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時間·日·週 또는 月을 單位로 하여 定한다. 이 경우 日·週 또는 月을 單位로 하여 最低賃金額을 定하는 때에는 時間給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就業期間이 6 月을 經過하지 아니한 18 歲 未滿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額과 다른 金額으로 最低賃金額을 定할 수 있다.

③賃金이 통상적으로 都給制 기타 이와 유사한 形態로 定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額을 定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額을 따로 정할 수 있다.

第6條(最低賃金の效力) ①使用者는 最低賃金の 適用을 받는 勤勞者에 대하여 最低賃金額 이상의 賃金を 支給하여야 한다.

②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最低賃金を 이유로 종전의 賃金水準을 低下시켜서는 아니된다.

③最低賃金の 適用을 받는 勤勞者와 使用者 사이에 最低賃金額에 未達하는 賃金を 정한 勤勞契約은 그 部分에 한하여 이를 無效로 하며, 無效로 된 部分은 이 法에 의하여 정한 最低賃金額과 同一한 賃金を 支給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賃金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賃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每月 1회이상 定期的으로 支給하는 賃金외의 賃金으로서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것
2. 所定の 勤勞時間 또는 所定の 勤勞日에 대하여 支給하는 賃金외의 賃金으로서 勞動部長官이 정하는 것
3. 기타 最低賃金額에 算入하는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勞動部長官이 따로 정하는 것.

⑤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勤勞하지 아니한 時間 또는 日에 대한 賃金の 支給을 強制하는 것은 아니다.

1. 勤勞者가 自己의 事情으로 인하여 所定の 勤勞時間 또는 所定の 勤勞日의 勤勞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使用者가 正當한 이유로 勤勞者에게 所定の 勤勞時間 또는 所定の 勤勞日의 勤勞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第7條(最低賃金の 適用 除外)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使用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6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 精神 또는 身體의 障礙로 勤勞能力이 현저히 낮은 者
2. 修習使用中에 있는 者
3.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事業內 職業訓練중 養成 訓練을 받는 者
4. 기타 最低賃金を 適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者

第3章 最低賃金の 決定

第8條(最低賃金の 決定) ①勞動部長官은 每年11月 30日까

지 다음 年度에 적용할 最低賃金を 決定하여야 한다. 勞動部長官이 最低賃金を 決定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審議를 要請하고,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審議·議決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を 決定하여야 한다.

② 最低賃金審議委員會는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으로부터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90日 이내에 이를 審議하여 最低賃金案을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審議하여 제출한 最低賃金案에 따라 最低賃金を 決定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30日 이내에 그 理由를 명시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 20日 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再審議를 要請할 수 있다.

④ 最低賃金審議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議要請을 받은 때에는 그 期間내에 이를 再審議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勞動部長官은 最低賃金審議委員會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議를 함에 있어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3分の2 이상의 贊成으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當初의 最低賃金案을 再議決한 내에는 그에 따라 最低賃金을 決定하여야 한다.

第9條(最低賃金案에 대한 異議提起) ① 勞動部長官은 第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低賃金審議委員會로부터 最低賃金案을 제출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또는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最低賃金案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告示된 날로부터 14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③ 勞動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가 理由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明示하여 第8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最低賃金審議委員會에 最低賃金案의 再審議를 要求하여야 한다.

④ 勞動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審議를 要求한 最低賃金案에 대하여 第8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再審議·議決된 最低賃金案이 제출될 때까지는 最低賃金을 決定할 수 없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또는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條(最低賃金の 告示와 效力發生) ① 勞動部長官은 最低賃金を 決定한 때에는 14日이내에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最低賃金은 다음 年度 1月1日부터 效力을 발생한다. 다만, 勞動部長官은 事業의 種類別로 賃金交渉時期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效力發生 時期를 따로 定할 수 있다.

第11條(周知義務) 最低賃金の 適用을 받는 使用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最低賃金を 그 事業의 勤勞者가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揭示하거나 그외의 適當한 方法으로 이를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4章 最低賃金審議委員會

第12條(最低賃金審議委員會의 設置)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 기타 最低賃金에 관한 重要事項의 審議를 위하여 勞動部에 最低賃金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 13 條(審議委員會의 機能) 審議委員會는 다음의 機能을 遂行한다.

1. 最低賃金에 관한 審議 및 再審議
2. 最低賃金 適用事業의 種類別 區分에 관한 審議
3. 最低賃金制度의 발전을 위한 研究 및 建議
4. 기타 最低賃金에 관한 重要事項으로서 勞動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의 審議

第 14 條(審議委員會의 構成등) ① 審議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이하 “公益委員”이라 한다) 各 9 人으로 構成한다.

② 審議委員會에 2 人의 常任委員을 두며 常任委員은 公益委員이 된다.

③ 委員의 任期는 3 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④ 委員이 闕位된 경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⑤ 委員은 그 任期가 滿了된 경우에도 後任者가 任命 또는 委囑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遂行한다.

⑥ 委員의 資格, 任命과 委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5 條(委員長과 副委員長) ① 審議委員會에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 1 人을 둔다.

②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公益委員중에서 審議委員會가 選出한다.

③ 委員長은 會務를 統轄하며 審議委員會를 代表한다.

④ 委員長에게 事故가 있는 때에는 副委員長이 職務를 代行한다.

第 16 條(特別委員) ① 審議委員會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公務員중에서 3 人이내의 特別委員을 들 수 있다.

② 特別委員은 審議委員會의 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③ 特別委員의 資格 및 委囑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7 條(會議) ① 審議委員會의 會議는 勞動部長官이 召集을 요구하는 경우, 在籍委員 3 分の 1 이상인 召集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 委員長은 審議委員會의 會議의 議長이 된다.

③ 審議委員會의 會議는 이 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④ 審議委員會가 第3-頁의 規定에 의한 議決을 함에 있어서는 勤勞者委員 및 使用者委員 各 3分の1 이상의 出席이 있어야 한다. 다만, 勤勞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이 2 회이상의 出席要求를 받고도 正當한 理由없이 出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8條(意見聽取) 審議委員會는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勤勞者와 使用者 기타 關係人의 意見을 聽取할 수 있다.

第19條(專門委員會의 設置) ① 審議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事業의 種類別 또는 特定 事項別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專門委員會는 審議委員會의 權限의 一部를 委任 받아 第13條 各號의 機能을 遂行한다.

③ 專門委員會는 勤勞者를 代表하는 委員,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各5人이내의 同數로 構成한다.

④第 14 條第 3 項내지 第 6 項, 第 15 條, 第 17 條 및 第 18 條의 規定은 專門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 規定중 “審議委員會”는 이를 “專門委員會”로 본다.

第 20 條(事務局) ① 審議委員會에 그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② 事務局에는 最低賃金の 審議등에 필요한 專門的인 사항을 調査·研究하게 하기 위하여 3 人이내의 研究委員을 둘 수 있다.

③ 研究委員의 資格·委囑 및 手當과 事務局의 組織과 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1 條(委員의 手當등) 審議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委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 22 條(運營規則) 審議委員會는 이 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議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4 章 補 則

第 23 條(生計費 및 賃金實態등의 調査)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生計費와 賃金實態등을 매년 調査하여야 한다.

第 24 條(政府의 支援) 政府는 勤勞者 및 使用者에 대하여 最低賃金 制度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資料의 제공 기타 필요한 支援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第 25 條 (보고) 勞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勤勞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賃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 26 條(勤勞監督官의 權限)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監督官으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게 한다.

② 勤勞監督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을 行使하기 위하여 事業場에 出入하여 帳簿와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할 수 있다.

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勤勞監督官은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勤勞監督官은 이 法 위반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 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다.

第 27 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額 令으로 定한다.

第 5 章 罰 則

第 28 條(罰則) 第 6 條第 1 項 또는 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 年 이하의 懲役 또는 1 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 29 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11 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 25 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報告를 한 者
3. 第 26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要求 또는 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虛偽의 陳述을 한 者

第 30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 28 條 또는 第 29 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個人에 대하여도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다른 法律의 改正) 勤勞基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34 條 및 第 35 條를 削除한다.

第 110 條第 1 號중 “第 28 條, 第 35 條”를 “第 28 條”로 한다.

第 3 條(最初로 施行되는 最低賃金の 決定에 관한 經過措置)

① 勞動部長官은 이 法 施行후 最初로 施行할 最低賃金の 決定을 위하여 1987年 6月 30日까지 審議委員會를 構成하여 1987年 7月 1日까지 審議委員會에 最低賃金の 審議를 要請하여야 한다.

② 審議委員會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要請을 받은 때에는 第 8 條第 2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20日 이내

에 이를 審議하여 最低賃金案을 勞動部長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勞動部長官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議委員會로
부터 最低賃金案을 제출받은 때에는 第 8 條第 1 項 및
第 10 條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87 年 12 月 15 日까
지 最低賃金を 決定·告示하여야 한다.

공배